

의안번호	2214794
의 퇴 인	김준혁 의원
회 답 일	2026.01.27.
추계번호	25C6650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9조의2 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	(제1항)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<u>실시하여야 한다</u>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병가·휴직 후 복직 지원 6. 장시간 근무, 과중한 업무 및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 개선 조치 (제2항)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</u>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<u>의료기관 또는 전문상담기관에</u>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<u>하여야 한다</u>. (제3항)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<u>기관과</u>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<u>구축하여야 한다</u>. (제4항) 교육감은 매년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고, 그 조사 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2 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교육감이 ①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, ②사업 위탁기관을 행정적·재정적으로 지원하며, ③매년 교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
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규모 확대 및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산출하기 곤란함
- 현행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하여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은 교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위탁기관을 지원하고 있음¹⁾
 - 정부는 전국 55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및 복귀 지원, 법률상담, 배상책임보험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
 - 특히,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'26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동 센터를 약 110개소로 확충하는 한편 교원보호공제를 확대할 계획임
 - 또한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를 교육활동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 진단 및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음
 - 동 조사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여 전체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, 시·도교육청은 매년 교원 마음건강 주간을 운영하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 있음
 - 한편, 교육부는 시·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
 - 동 조사는 침해행위의 유형별 현황 및 조치 파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정안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목적·내용 등이 상이하나, 두 조사가 통합·연계되어 실시될 경우 제반 비용이 절감될 가능성이 있음
 - 이처럼 현재 유사 취지의 사업이 운영 중이고 관련 인프라 확충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시행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곤란함

1)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

제29조의2(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실시) ① 교육감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정신건강 상담·검사·진료비용 지원
2. 정신질환 예방·치료·재활 프로그램 운영
3.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
4.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
5.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교육감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위탁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교육감은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- 이에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정현수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정현수	02-6788-4627	jhs@assembly.go.kr